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 례 안
(4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조례명	쪽수
2023-100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과)	1
2023-101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	5
2023-102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설교통과)	9
2023-103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	13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00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27. 시행)되어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전부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함

나. 위임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2조)

다.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5조)

1) 지원절차, 지원방법, 지원중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8. 11.~8.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반영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거창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절차)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지원금 정산서
4. 지출결의서
5. 방법일지
6.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거창경찰

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0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관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부담 기준을 강화하고 물품 운영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추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사 운영비 정비(안 제48조)

- 1) 원칙: 사용자부담(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요금을 포함)
- 2) 예외적으로 예산지출: 보수비, 가구·가전·기계 등의 설치·교체비, 주택관리비

나. 물품의 구분 정비(안 제55조, 별표 3)

-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물품 관리기준 변경사항 반영
 - 가) 소모품 기준에 취득단가 변경: 1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나) 용어 및 문장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58조, 제9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7. 26.~8.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및 제5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관사 운영비) ① 관사의 운영비(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을 포함한다)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관사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수비
2. 기본생활에 필요한 가구·가전·기계 등의 설치·교체비
3. 화재보험료 등 주택관리비

제55조(물품의 구분) ① 물품의 종류·상태의 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4에 따른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8조(관사 운영비)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용, 공작물·구축물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전기·전화·상하수도 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 가스 사용료,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공동주택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6.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비용(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주차비, 텔레비전 등의 시청료, 그 밖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p>제55조(물품의 구분) ① 물품은 소모성 정도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그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요정비품·폐품으로 구분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은 별표 3, 정리구분은 별표 4와 같다.</p>	<p>제48조(관사 운영비) ① 관사의 운영비(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을 포함한다)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사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수비 2. 기본생활에 필요한 가구·가전·기계 등의 설치·교체비 3. 그 밖에 화재보험료 등 주택관리비 <p>제55조(물품의 구분) ① 물품의 종류·상태의 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p> <p>②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4에 따른다.</p>

[별표 3]

물품의 종류·상태 구분(제55조 관련)

1. 물품의 종류

가. 비소모품

- 1)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2) 취득 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

나. 소모품

- 1)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2)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2. 물품의 상태 분류기준

가. 신품: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물품

나. 중고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물품

다.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

라. 폐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0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민간·공공분야 건설경기 동반 하락과 관내 및 도내 건설업체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및 공사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건설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신설함(안 제3조의2)
- 나. 공사의 분리 발주 신설함(안 제3조의3)
- 다. 불필요한 조문 삭제함(안 제12조·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7. 21.~8. 1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반영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이 4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하도급 하려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70퍼센트 이상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

제3조의3(공사의 분리 발주)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사의 분리 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분리 발주할 수 있다.

제12조 및 제14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3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u>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이 4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군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하도급하려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70퍼센트 이상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3조의3(공사의 분리 발주)</u>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사의 분리 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분리 발주할 수 있다.</p>
<p><u>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u>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삭 제></u></p>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0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정비함(안 제5조의3·제8조)

나.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을 명시함(안 별표 2)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7)

1)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횡수별 차등부과
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절차 개선함(안 제26조)

- 1) 중소기업부의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 조례 개선권고사항 반영
- 2) 수수료 감면조건이 명확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생략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7조·제20조
- 2)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5조, 별표 5, 별표 8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7. 6.~7. 2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설치·관리에 관하여”를 “설치·관리에”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운영 등에 관하여”를 “운영 등에”로 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등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3.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별표 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

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7 제1호 차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3(전자계시대의 표출관리) ①~② (생략)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계시대의 <u>설치·관리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p> <p>제8조(주민협약회의의 운영) ① (생략)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약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그 밖에 주민협약회의의 <u>운영 등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약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p> <p>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② (생략) ③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u> 1. <u>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u> 2. <u>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p>	<p>제5조의3(전자계시대의 표출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계시대의 <u>설치·관리에</u>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p> <p>제8조(주민협약회의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약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주민협약회의의 <u>운영 등에</u>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약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p> <p>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광고물등에 대하여는</u>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u>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등</u> 2. <u>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u> 3. <u>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u></p>

④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삭 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 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

배를 적용한다.

- 아.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 이하의 0.5㎡로 0.5㎡ 초과 1.0㎡ 미만은 1.0㎡로 계산한다.
- 자.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 장 또는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 차. 제2호가목·라목·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카. 차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차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타.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또는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		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60천원	장당 45천원 장당 55천원 장당 65천원 장당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 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 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 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